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995

발의연월일: 2022. 3. 29.

발 의 자:김교흥·강선우·김수흥

김영주 • 박영순 • 박찬대

윤관석 • 이상헌 • 이성만

장경태 · 허종식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1월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향후 공시가격은 10년에 걸쳐 시세의 90%에 도달할 예정이며, 2 021년 12월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에 육박하는 등 공시가격 현실화 및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을 11억으로 상향 조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반면 재산세는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기존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을 현행 공시가격(시가 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1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하여 실

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2제1항 중 "9억원"을 "11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의 유효기간은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 정법률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3조(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	주택 세율 특례) ①
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	
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	
준액이 <u>9억원</u> 이하인 주택에	<u>11억원</u>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
표 (생 략)	표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